

광주지방법원 2022. 2. 11 선고 2021가단50552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12. 24.

판 결 선 고 2022. 2. 11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, 가.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2020. 1. 10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나. 피고 B는 소외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, 다. 피고 C은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0. 2. 21. 접수 제24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19119호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, 2020. 9. 16. 'D은 원고에게 646,755,795원 및 그 중 646,019,708원에 대하여 2020. 9. 14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'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20. 11. 24. 확정되었다.

나. D은 자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0. 1. 14. 접수 제532호로 배우자인 피고 B 앞으로 같은 달 10.자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 그 후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0. 2. 21. 접수 제2416호로 남매관계인 피고 C 앞으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 주장(청구원인) 요지

채무자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D과 수익자인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, 전득자인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,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,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

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,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, 앞서 본 증거들과 을가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E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06. 9. 29.자로 근저당권자를 E조합, 채권최고액을 40,000,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, 2011. 8. 4.자로 저당권자를 최연고, 채권액을 140,000,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던 사실,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1,550,710원이고,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30,000,000원인 사실,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100,837,1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위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는 합계 151,550,710원(=21,550,710원 + 130,000,000원)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100,837,100원을 초과하므로, D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D의 일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따라서,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용태

별지 1

부동산의 표시

1. 전라남도 장성군 대 377㎡2. 전라남도 장성군 [도로명 주소] 전라남도 장성군

벽돌구조 이스팔트상판지붕 단층 주택 72.93㎡, 골.

